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가단1269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함성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1. 9. 26.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 및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형순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공증을 받은 소외 C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갑제 3호증의 1내지 2 각 참고]

나. (1)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은 망) D 소유였습니다.

[갑제 1호증 및 갑제 2호증 각 참고]

(2) 망) D는 2021. 9. 16. 사망하였고, D 사망 당시 상속인은 소외 C, E, 피고 B이 있었습니다.

[갑제 4호증 기본증명서(D), 갑제 5호증 가족관계증명서(D) 각 참고]

(3) D가 2021. 9. 16. 사망하자 C, E, B이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 D 지분을 각 1/3씩 상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소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C의 유일한 상속 받은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 D 지분 중 1/3지분을 2021. 9.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5)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 D의 지분 중 1/3지분 소유권을 소외 C으로부터 경료 받으면 원고가 채권 집행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약정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자입니다.

2.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피보전 채권

가. (1) 원고는 소외 C에게 2021. 7. 29. 금 10,000,000원을 빌려주고 갑제 3호증의 1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갑제 3호증의 1 공정증서 참고]

(2) 소외 C은 2021. 6. 11. 망) D의 원고에 대한 금 62,500,000원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제 3호증의 2 공정증서 참고]

3.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가. 대법원 판례

(1) 대판 2001. 2. 9.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 2. 26. 2007다29119)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대판 1966. 10. 4. 66다1535 판결

채무자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추정되고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소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C의 유일한 부동산(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D의 지분 중 1/3지분에 관하여 2021. 9. 1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소외 C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다. 피고는 소외 C과 형제 관계로 C이 상속재산을 분할협약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소외 C의 채권자는 채권집행을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악의입니다.

4. 원상회복 관련

가. D가 2021. 9. 16. 사망함에 따라 소외 C은 등기 명의와 관련 없이 법률에 따라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 D의 지분 중 1/3지분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소외 C에게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 D의 지분 중 각 1/3지분에 대하여 말소 등기를 하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 소외 C은 진정소유자이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 D의 지분 중 1/3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5. 결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1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

철근콘크리트조

1층 93.60㎡

2층 93.60㎡

3층 74.85㎡

지층 135.20㎡

별지목록 2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 376㎡

— 이 상 —

